

●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448호**

「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1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**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
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

표준약정서 제정·개정 관련 세부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고, 시행령에서 표준약정서는 공고하도록 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표준약정서 규정 및 서식 삭제(현행 제3조, 별지 제1호 서식)

- 표준약정서 세부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고, 시행령에서 표준약정서는 공고하도록 정함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일 까지 중소기업부장관(참조 : 불공정거래개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bluesky82@korea.kr
- 2) 주소 : 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기림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
- 3) 팩스 : 044-204-794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(전화 : 044 - 204 - 791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수탁 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표준약정서) ①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의 표준약정서는 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건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, 용역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한다.</u></p> <p><u>③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업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제1항의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4호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별지 제1호 서식</u></p>	<p><삭 제></p>